

주식 양도소득세, 더 쉽게 '간편신고' 하세요

- 국세청, 2023. 8

-
- (신고의무) 2023년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주,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8월 31일(목)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안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8월 8일(화)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자 중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와 상장법인 대주주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TC : Korea-Over The Counter)
 - 예정신고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모바일로 전송되며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안전하고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납세자(다회선자, 수신 거부 등)는 우편을 통해 예정신고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신고서비스)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본인 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도움자료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 (간편신고 서비스) 8월 예정신고부터 신고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종목 이하(거래횟수 3회 이내)의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가 양도소득과 세액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맞춤형 도움자료)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대주주 주식거래내역, 주식양도 신고도움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성실신고) 무신고,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신고하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1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는 8월 31일까지입니다.

- (신고 의무) 2023년 상반기(1월~6월)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의 주주와 상장법인 대주주(장외거래를 한 경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대상)는 8월 31일(목)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한국장외시장¹⁾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 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²⁾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1)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TC : Korea-Over The Counter)
 - 2) 대주주(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아닌 모든 주주
- (신고 안내)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신고의무가 있는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와 상장법인 대주주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예정신고 안내문 발송 일정 |

8.8.	8.9.	8.1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우편 안내문**

* 카카오톡 수신이 안 되는 경우, 문자메시지 안내

**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다회선자, 모바일 안내문 수신 거부자 등에 안내

- (상장법인 대주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 |

구 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 분 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공통)		

- 2023년 주식 양도분부터 상장법인 대주주를 판단*할 때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합산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 (대주주 판단 순서) ① 본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 ② 최대주주 여부 판단 → ③ 특수관계자 합산 범위 판단 → ④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 판단

** 최대주주는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였을 때, 해당법인의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 중 지분율이 가장 큰 경우 해당 “주주 1인”을 의미

2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간소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다양한 본인인증 방법을 통해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 도움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인증 방법 |

홈택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아이디 로그인 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 패스 등 민간인증서)
모바일 손택스	홈택스 본인인증 방법, 생체인증(얼굴*, 지문)

* 얼굴을 통한 생체인증은 아이폰만 가능

- (홈택스) 로그인 후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예정신고 》 일반신고 또는 주식 양도 간편신고」를 선택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로그인 후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일반신고(예정신고)」를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신고 편의를 제공합니다.

①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 예정신고 대상기간(반기별) 중 거래한 주식 종목 수와 거래 횟수가 적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일반신고보다 작성이 손쉬운 간편신고 서비스 제공
- 입력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득금액과 세액계산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여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 (간편신고서) ①기본정보(양도인) → ②양도소득금액명세서 및 세액계산 → ③신고서 제출
(일반신고서) ①기본정보(양도인) → ②기본정보(양수인) → ③주식양도소득금액명세서 → ④세액계산맞확인 → ⑤신고서 제출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예정신고 》 주식 양도 간편신고

* 손택스 간편신고는 홈택스 간편신고 이용실적 등을 검토하여 추가로 제공 예정

② 대주주의 주식거래내역 제공 (8월11일부터 제공)

- 증권사 등을 통해 수집한 한국장외시장 거래내역과 상장주식 거래내역을 제공하며,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자료 내려받기'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 》 (하단) 4. 주식등 거래내역



- ▶ (손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하단) 주식 등 거래내역

3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돕기 위해 6가지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① 세법TIP, ② 신고서 작성사례, ③ 자기검증용 검토서

④ 전자신고가이드, ⑤ 자주 묻는 질문, ⑥ 신고오류사례

- ▶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우측)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 ▶ (손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

4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집중호우 피해 등 자연재해로 심각한 어려움을 발생하거나 본인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 중상해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 등일 때에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관할 세무서에 「기한연장증인신청서」를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거나,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 (손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5 회선의 절세방법은 성실 신고·납부입니다.

-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사후에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공정과세 실현을 저해하는 불성실 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 (가산세)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는 경우(10%),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20%),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 하는 경우(40%) 가산세가 부과되며,
 - 납부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편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참고자료

참고 1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개요

구분	내 용															
신고 대상	<input type="checkbox"/> (대상) '23년 상반기(1월~6월)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주와 상장법인 대주주, 상장법인 소액주주로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과세제외) 상장법인 소액주주로서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input type="checkbox"/> (예정신고 제외)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양도는 5월 확정신고만 가능															
대주주 기준	<input type="checkbox"/>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말, 본인과 특수관계인 보유한 주식을 합산(상장법인 주주는 최대주주 여부에 따라 합산 범위가 달라짐)하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단, 사업연도 중 지분율 기준 충족 시 충족 이후부터 대주주로 봄 <input type="checkbox"/> 대주주 기준('20.4.1.이후 ~ 현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5px;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15%;">코스피</th> <th style="width: 15%;">코스닥</th> <th style="width: 15%;">코넥스</th> <th style="width: 15%;">비상장법인</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지분율</td> <td style="text-align: center;">1%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2%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4%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4% 이상</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또는 시가총액</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10억 원 이상 (공통)</td> </tr> </tbody> </table>	구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법인	지분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공통)			
구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법인												
지분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공통)															
합산 대상 특수관계인	<input type="checkbox"/> 상장법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5px;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40%;">개 정 (2023.1.1. 이후 양도 주식)</th> <th style="width: 50%;">종 전 (2022.12.31.까지 양도 주식)</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최대주주</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 4촌 이내 혈족 (축소) ◦ 3촌 이내 인척 (축소) ◦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경영지배관계 ◦ 주주1인이 「민법」에 따라 인정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추가)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 6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 ◦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경영지배관계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최대주주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산대상 없음 (삭제)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 직계 존·비속 ◦ 경영지배관계 </td> </tr> </tbody> </table> <p style="margin-top: 5px;">※ 최대주주 여부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p>	구분	개 정 (2023.1.1. 이후 양도 주식)	종 전 (2022.12.31.까지 양도 주식)	최대주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 4촌 이내 혈족 (축소) ◦ 3촌 이내 인척 (축소) ◦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경영지배관계 ◦ 주주1인이 「민법」에 따라 인정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 6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 ◦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경영지배관계 	최대주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산대상 없음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 직계 존·비속 ◦ 경영지배관계 						
구분	개 정 (2023.1.1. 이후 양도 주식)	종 전 (2022.12.31.까지 양도 주식)														
최대주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 4촌 이내 혈족 (축소) ◦ 3촌 이내 인척 (축소) ◦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경영지배관계 ◦ 주주1인이 「민법」에 따라 인정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 6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 ◦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경영지배관계 														
최대주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산대상 없음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 직계 존·비속 ◦ 경영지배관계 														
세 율	<input type="checkbox"/> 세율 10% ~ 30%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5px;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colspan="2" style="width: 50%;">대주주</th> <th colspan="2" style="width: 50%;">소액주주</th> </tr> </thead> <tbody> <tr> <td style="width: 25%;">과세표준 3억 원 이하</td> <td style="width: 25%; text-align: center;">20%</td> <td style="width: 25%;">중소기업 주식 양도</td> <td style="width: 25%; text-align: center;">10%</td> </tr> <tr> <td>과세표준 3억 원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25%</td> <td>그 외 주식 양도</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body> </table> <p style="margin-top: 5px;">※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30%</p>	대주주		소액주주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중소기업 주식 양도	1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그 외 주식 양도	20%			
대주주		소액주주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중소기업 주식 양도	1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그 외 주식 양도	20%													
신고 납부 기한	<input type="checkbox"/> (신고) '23. 8. 31.(목)까지 홈택스·손택스(매일 06시~24시)와 우편·방문을 통해 가능 <input type="checkbox"/> (납부) 신고기한과 동일, 금융기관 및 홈택스(매일 07시~23시30분)를 통해 가능 <input type="checkbox"/>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 시 2개월까지 분납가능															



참고 2 -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FAQ)

1.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

- ① 상장법인 대주주(장내·장외 거래 불문) ②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 ③비상장법인 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23년 상반기(1월~6월)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구 분	상장법인 주주		비상장법인 주주	
	장내거래	장외거래	K-OTC 거래	장외거래
대주주	○ 신고·납부 대상	○ 신고·납부 대상	○ 신고·납부 대상	○ 신고·납부 대상
소액주주	○ 신고·납부 대상 제외	○ 신고·납부 대상	○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신고·납부 대상에서 제외	○ 신고·납부 대상

- 해당 주식이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 등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구 분	신고·납부 기한	신고기한 (예: 양도일 '23. 5. 17.)
상장주식·비상장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23. 8. 31.
특정주식·부동산과다 보유법인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23. 7. 31.
국외주식, 파생상품	확정신고(예정신고 대상 아님)	'24. 5. 31.

2.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는?

- '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식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에 대한 지분을 또는 시기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157④, ⑤)

* (최대주주인 경우) 본인과 기타주주(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경영지배관계 법인, 주주 1인이 「민법」에 따라 인정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 지분만으로 판단

(지분율, 시가총액)

구분	'16.4.1.이후 양도	'18.4.1.이후 양도	'20.4.1.이후 양도
코스피	1% 또는 25억 원 이상	1% 또는 15억 원 이상	1% 또는 10억 원 이상
코스닥	2% 또는 20억 원 이상	2% 또는 15억 원 이상	2% 또는 10억 원 이상
코넥스	4% 또는 10억 원 이상	좌동	좌동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추가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함
- 대주주 판단 시, 상장법인은 최대주주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인 합산 여부가 달라지는데,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모두 합산하여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지만,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의 지분만으로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비상장법인은 최대주주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인 합산 범위가 달라짐

《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시 합산하는 특수관계인 》

구분	개정 (2023.1.1. 이후 양도 주식)	종전 (2022.12.31.까지 양도 주식)
합산대상 특수관계 인	최대주주 ○	최대주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축소) 3촌 이내 인척 (축소) 경영지배관계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주주1인이 「민법」에 따라 인정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경영지배관계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최대주주 ×	최대주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산대상 없음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 직계 존·비속 경영지배관계

※ 상장법인 대주주는 장내/장외거래 모두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는 장내거래는 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나 장외거래에는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대주주의 양도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30%이며, 소액주주의 양도세율은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 10%, 그 외 주식 양도 시 20% 임

(비교) 비상장법인은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의 합산대상 범위에는 변동없음



《 비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시 합산하는 특수관계인 》

구분	개 정 (2023.1.1. 이후 양도 주식)	종 전 (2022.12.31.까지 양도 주식)
합산대상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 ○ 배우자 ○ 4촌 이내 혈족 (축소) ○ 3촌 이내 인척 (축소) ○ 경영지배관계 ○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 주주1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추가)	최대주주 ○ ○ 배우자 ○ 6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 ○ 경영지배관계 ○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최대주주 × ○ 배우자 ○ 직계 존·비속 ○ 경영지배관계	최대주주 × ○ 배우자 ○ 직계 존·비속 ○ 경영지배관계

※ 비상장법인 주주는 기본적으로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나, 다만 한국장외시장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신고·납부 의무가 없음
 대주주의 양도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30%이며, 소액주주의 양도세율은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 10%, 그 외 주식 양도 시 20% 임

3.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

-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을 통해 거래한 주주의 경우 증권사로부터 거래내역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한국장외시장 외)를 한 주주의 경우에도 신고대상이지만 자료 수집 시점 차이 등으로 인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추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하여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니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거래하신 경우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과세제외되는 한국장외시장 거래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한국장외시장(K-OTC) 거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합니다.
- 한국장외시장(K-OTC) 대주주 요건(지분율 4%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소액주주에 해당합니다.

5.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전자신고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6. 증권거래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

- 상장주식 등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매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있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업자(증권사)가 거래 징수하지 않은 상장·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 상장주식 장외거래와 비상장주식의 2023년 상반기 거래분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은 0.35%임

7. 국외주식을 2023년 상반기(1월~6월)에 양도했는데 예정신고 대상인지?

-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2024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8. 2023년 상반기(1월~6월)에 양도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양도손익을 합산한 결과 양도소득이 0원인 경우 합산신고하거나 예정신고를 생략해도 되는지?

- 202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간 양도소득 손익 통산이 허용되지만, 손익을 통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예정신고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과소 납부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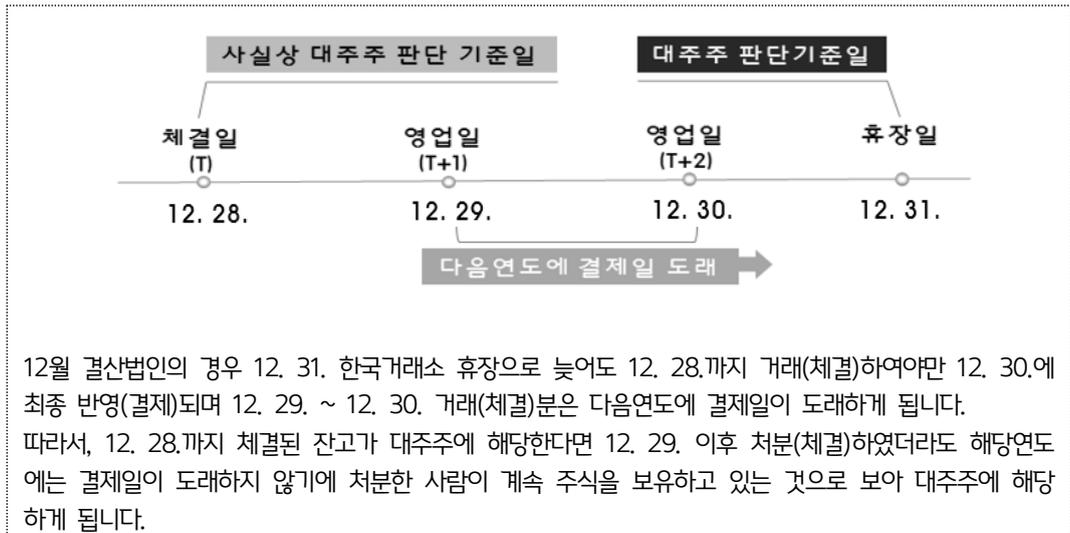
9. 주식양도 시 당해연도의 양도손익은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가 되는지?

- 당해연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예정신고 시 국내 주식 간 양도손익과 확정신고 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간 손익통산은 가능하나,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되지 않습니다.



10. 직전연도 말에 주식을 처분한 경우 대주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 보유현황으로 판단하고, 주식 보유현황은 결제일인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일이 되는 날 대금결제(T+2, 한국거래소 영업일)가 이뤄지므로 해당 대금결제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2. 31. 한국거래소 휴장으로 늦어도 12. 28.까지 거래(체결)하여야만 12. 30.에 최종 반영(결제)되며 12. 29. ~ 12. 30. 거래(체결)분은 다음연도에 결제일이 도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12. 28.까지 체결된 잔고가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12. 29. 이후 처분(체결)하였더라도 해당연도에는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기에 처분한 사람이 계속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주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예) '23년 양도 주식(12월 결산법인)은 '22.12.30.이 한국거래소 휴장일이기 때문에 연도 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짜인 '22. 12. 27. 계약체결 기준으로 판단함

11. 안내문을 받고 조회해 본 주식거래내역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거래내역은 증권사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이므로 거래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증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예정신고 대상 기간 주식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홈택스를 통하여(본인인증 후 접속) 상장법인 대주주 본인의 주식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증권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주식 등 거래내역)
 - ☞ 예정신고 대상기간을 포함한 직전 5개년 거래내역 조회 가능
 - 다만, 증권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거래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거래하는 증권사에 자료 제공 내용을 확인해야 함

- 또한, 본인 이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거래내역은 개별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제공되지 않습니다.

13.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와 납부가 가능한 시간은?

- 신고는 매일 06:00~24:00, 납부는 07:00~23:30까지 가능함
 - 다만, 금융거래용 공동인증서를 사용해야만 세금 납부 가능

14. 양도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지?

-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 까지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이하까지는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예정신고 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를 분할 납부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예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15.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신고 의무 여부 및 무신고시 불이익은?

- 비상장법인의 주주도 주식을 양도한 경우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 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는 경우(10%),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20%),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 하는 경우(40%)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3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안내

①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구 분	주요 내용
홈택스 (P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모든 종류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이용 가능 ○ 접근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속 후 '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예정신고 작성' 선택 ○ 이용 시간: 매일 06:00 ~ 24:00 (~8.31.) ○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유튜브 참조

홈택스 (PC)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손택스 (모바일)	○ 대상자: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이용 가능 ○ 접근 방법: 「아이폰 App Store」에서 '손택스' 검색 후 '받기' 「안드로이드 Play 스토어」에서 '손택스' 검색 후 '설치' ※ 앱 로그인 후 '신고/납부'→'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일반신고(예정신고)' 선택 ○ 이용 시간: 매일 06:00 ~ 24:00 (~8.31.) ○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유튜브 참조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
우편신고 · 방문신고	○ 신고기한: '23. 8. 31.(목) 18:00까지 ○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②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구 분	주요 내용
홈택스· 손택스 (PC·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홈택스)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 (손택스)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홈택스)'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선택 ※ (손택스)'신고/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선택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 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납부시간: 07:00-23:30(연중무휴)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or.kr)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 조회 또는 입력 후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납부시간: 00:30-23:30(연중무휴) * 인터넷지로 정기점검 시간 등에는 납부 불가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 분할납부 불가, 납부시간은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설치한 공과금 납부 전용 단말기
세무서 (무인수납)	○ (무인카드수납기*)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전용 단말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참고 4 - 홈택스·손택스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1. 주식 양도소득세 세법TIP

- (세법정보) 양도소득세 과세개요 및 대주주의 범위 등의 정보를 제공

2. 신고서 작성사례

- (작성사례) 실제 사례를 통한 신고서 작성요령을 안내

3. 자기검증용 검토서

- (자기검증) 대주주 및 중소기업 요건, 세율 적용 검토 서식을 점검표로 제공

4. 전자신고가이드

- (전자신고) 홈택스·손택스 신고 흐름을 안내

5. 자주 묻는 질문

- (질문제공)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 답변과 함께 제공



6. 신고오류사례

□ (오류사례) 반복해서 발견되는 오류 및 무신고 사례를 제공

참고 5 - 이것만은 유의하세요

구분	잘못 신고하기 쉬운 주요 사례
세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1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일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20.6.11.이후 양도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소기업 주식으로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 가능 ○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1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주주 : 20~25%,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주식 : 30% ☞ 연간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 25% 세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 '20.1.1.이후,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18.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상장 여부 불문)에 해당하는 경우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 대상이나 일반 주식세율(10%, 20%, 25%, 30%)을 적용하여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 중 비상장토지가 50% 이상인 경우 누진세율에 10%p 더한 세율 적용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세율 30%를 적용하여야 하나 20~25% 세율로 신고 ○ 중소기업이 아닌 상장·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5%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1년 이상 보유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상반기 예정신고 시 상장법인 대주주로서 과세표준 2.5억 원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23년 하반기 예정신고 시 비상장법인 대주주로서 과세표준 1억 원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 '20.1.1.이후 양도분부터 중소기업 대주주 해당 법인 주식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대주주 해당 법인 주식(1년이상 보유)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20-25%)을 적용하여야 하나, 합산하지 않고 각각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은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해야 함
대주주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 당시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생각하여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하지 않고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법인 최대주주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 유무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양도 당시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혼인 상태였다면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최대주주 여부

구분	잘못 신고하기 쉬운 주요 사례
	<p>를 판단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연도에 거래하는 해당 법인 주식 전부는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하고 새로 매수한 주식이라는 이유로 무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 A사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직전 사업연도에 보유한 A사 주식 전부를 매각하고 A사 주식을 새로 취득하여 장내에서 양도한 주식도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봄 ○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을 직전 사업연도 말일 주식 체결 현황으로 잘못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주식은 체결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T+2, 한국거래소 영업일) 기준으로 대주주의 주식 보유현황을 판단하여야 함
손익 통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기타자산 등은 제외)을 '23년 상반기에 양도, 국내주식은 양도 차익이 발생하고 국외주식은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예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금액을 통산하여 잘못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 이후 국내·국외 주식 간 손익통산 가능하나,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국외 주식 양도차손을 예정신고로 국내주식과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인 주식만 손익 통산이 가능하나 과세대상이 아닌 상장법인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한 주식과 상장법인 대주주로서 거래한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손익 통산하여 신고한 경우 ○ 주식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의 양도소득금액과 우선 차감하고 남은 차손을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해야 하나, 세율이 높은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우선 통산하여 신고한 경우
기본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에 국내주식을 양도 후 예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공제하고, 국외주식(기타자산 제외) 양도 후 확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각각 공제하여 소득금액 과소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부터는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기타자산 제외)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간 250만 원만 공제 가능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법인 대주주의 경우 장내거래뿐만 아니라 장외거래도 신고 대상이나 장내거래만 신고한 경우